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2. 6. 13 (수요일), 14:00 ~ 18: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노중국, 강태호, 김권구, 김상현, 김정동,
김정신, 손영식, 이상필, 이재근, 이태진,
채미옥, 홍승재(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여수 석보 사적 지정	
3	삼척 준경묘·영경묘 사적 지정	
4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외 공영주차장 신축	
5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주변 태극기공원 조성 및 대형국기 게양대 설치	
6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 교회 승강기 증축	
7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주변 탐방로 개설 및 관리사 개축	
8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9	사적 제117호 경복궁 주변 건물(일본 대사관) 신축	
10	사적 제123호 창경궁 문화재보호구역 내외 주택신축	
11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2	사적 제135호 부여 궁남지 내 정비사업	
13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14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주변 대성암 석축보수	
15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내외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6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주변 단독주택 단지 조성	
17	사적 제207호 홍릉과 유릉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	
18	사적 제309호 남원 실상사 내 어린이집 신축	
19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등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	
20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골프장 조성	
21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주변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2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내 역사근린공원 리모델링	
23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 주변 자연장 설치	
24	사적 제496호 김제 금산사 일원 주변 호텔 증축	

25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26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7	사적 제127호 진도 남도진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8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11건	
【검토사항】		
29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검토	
30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주변 신설고속도로 교량경관 검토	
【보고사항】		
31	사적 제117호 경북궁 소주방권역 내 수목이식공사 보고	
32	사적 제124호 덕수궁관리소 사무동 (물품보관소) 신축 보고	
3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06-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내 19필지 1,942㎡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회의(4.18)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2.04.30(문화재청 공고 제2012-143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지정신청
 - 기지정 면적 : 서울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623필지 284,295㎡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1-14번지 등 19필지 1,942㎡
 - 추가지정 후 면적 : 642필지 286,219㎡
- (4) 지정사유
 -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2.3.23)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번 면적(m ²)	지정신청 면적(m ²)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91-14	대	122	122		
2	풍납동	290-1	대	194	194		
3	풍납동	126-2	도	162	162		
4	풍납동	126-32	대	13	13		
5	풍납동	126-33	대	17	17		
6	풍납동	126-57	대	17	17		
7	풍납동	126-88	대	10	10		
8	풍납동	126-95	도	393	393		
9	풍납동	126-144	대	20	20		
10	풍납동	126-148	대	20	20		
11	풍납동	126-151	대	89	89		
12	풍납동	126-183	도	205	205		
13	풍납동	126-188	도	184	184		
14	풍납동	130-27	대	23	23		
15	풍납동	152-70	대	101	101		
16	풍납동	152-84	도	8	8		
17	풍납동	130-35	대	178	178		
18	풍납동	131-54	대	93	93		
19	풍납동	131-55	대	93	93		
합계		19필지		1,942	1,942		

2. 여수 석보 사적 지정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전라남도 기념물 제106호 「여수 석보(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수 석보는 15세기 중반 평지부에 방형으로 축조된 석축성으로 육국진보성으로는 유일하여 성곽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적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을 보호하고자 함
- 동 건은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12.4.18)의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한 후 심의사항으로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간('12.4.26~5.25)
 - 지정 예고결과 : 지정에 대한 이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수 석보(성)(전라남도 기념물 제106호/1987.1.15 지정)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 868번지 일원
- (3)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 대상 : 여수 석보(麗水石堡)
 - ※ 제4차 회의('12.4.18)때 역사적인 기록 등을 고려하여 여수 석보성이 아닌 여수 석보로 신청 대상의 명칭 변경
 - 신청 면적 : 106필지 77,393m²
- (4) 관리단체 : 전라남도 여수시
- (5) 신청사유
 - 여수석보는 전라도 육군이 수자리하던 대표적인 요충지에 축조된 성곽시설로서 당시 관방체제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므로 국가지정 문화재(史蹟)로 지정 신청하고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12.04.06/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1)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여수석보성은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이 있던 여수 동쪽해안, 선소가 있던 여수 남쪽해안, 광양만의 북쪽 해안을 비롯하여 백야곶(화양)목장과 돌산진이 있던 화양면 방면의 해안지역과 순천을 연결하는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음
- 또한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까지 여수의 옛 치소로 이용된 선원동산성(남쪽)과 봉계동토성(북동쪽)이 바로 인접해 있는 중간지대의 평지부에 들어서 있음.
- 순천도호부와 전라좌수영 등 육지와 해안으로 통하는 지점인데, 당시는 왜구(倭寇)의 준동(蠢動)에 대비하여 여수반도의 중심지역에 보(堡)의 기능을 위한 곳이었으나 현재는 여천산업단지와 여수로 통하는 지방도로와 17번국도가 교차되는 석창사거리지점으로 여수반도의 관문에 해당하는 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음

○ 성곽현황(城郭現況)

- 석보성은 당시 널리 활용되었던 산지(山地)나 평산(平山)지역과 달리 평지(平地)에 마련된 방형(方形)의 소규모 석보(石堡)로 출발하였음. 성의 규모는 한 변이 170m내외이고, 전체가 703m정도의 소규모의 석성(石城)임.
- 그동안 발굴조사를 거쳐 성 내외 대부분의 시설물이 밝혀졌는데, 성문은 북문을 제외한 3곳에 성문이 있었고, 성벽은 정방형형태이나 모서리가 말각(末角)된 형식이고, 성외에는 성벽을 따라 해자를 들렀음. 그 외 성내에는 건물지(建物址)와 연지(蓮池), 그리고 우물지가 조사되어 그 크기와 형태를 알 수 있음

○ 연혁 유래 및 특징

- 석창성(石倉城)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세조실록(世祖實錄)상에 세조 3년(1457) 1월16일로 이 당시 석창성(石倉城)은 여수석보(麗水石堡)라는 이름이 보이게 됨.
- 이전까지 석보(石堡)는 없었으므로, 이 성은 이 당시 마련되었다고 봄. 처음에는 여수석보(麗水石堡)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 외 석보창(石堡倉), 여수보(麗水堡) 등으로도 불렸음.
- 이는 석보(石堡)로 출발하였으나 나중에는 세미(歲米)의 창고기능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 석창성(石倉城)은 조선조말

고종 32년(1895) 군제개혁(軍制改革)이 될 때까지 운용되었음

- 석창성은 조선 초기 성종(成宗)때부터 해안방어의 일환으로 수군진성(水軍鎭城)이 주로 축조되었는데, 석창성(石倉城)은 그 이전에 마련된 석보(石堡)로 일반적인 진성(鎭城) 또는 읍성(邑城)과는 축성의도가 다른 보(堡)의 성곽(城郭)으로 그 예가 독창적임.
- 성벽은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으나, 성곽전체의 규모와 형태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성벽이 상대적으로 잘 남아있음.
- 성벽에는 축성(築城)을 담당한 각자성석(刻字城石: 求禮始面)이 남아있어 성역(城役)담당을 알 수 있고, 축성형식은 특징은 조선전기의 해안지역의 읍성의 축조형식과 같은 형식임을 알 수 있음.
- 성 외부에 마련된 해자(垓子)시설이 조사되었고, 성문형식(城門形式)도 가늠할 정도로 조사됨.
- 그간에 사유지를 대부분 매입하여 발굴조사과정을 거쳐 성곽유적의 성격을 파악하였으며, 최근에 학술대회를 통하여 성곽유적의 성격과 정비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음.
- 군사·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여 15세기 중반 육군진보성으로 축조되었으나, 연해안 방어체제 등의 변화로 인하여 1522년 이후 세금을 수납하여 보관 하던 창성 및 장시로 활용되었음
- 평지부에 방형으로 축조된 석축성으로서 독특한 성곽유형을 보여주며, 서벽의 명문(銘文)을 통해 축조시 인근 고을주민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전 구간에 걸쳐 해자가 설치되었으며, 배수로 및 수구의 축조수법 등이 확인되어 물의 유입·배출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음
- 평지부에 방형으로 축조한 육군진보성으로는 유일하며, 조선시대 성곽 가운데 새롭게 확인된 성곽유형을 보이는 점, 전 구간에 걸쳐 첫째 단을 세워쌓기한 점, 대형 지대석을 사용한 점 등 다른 성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성곽사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15세기 중반 전라도 육군이 수자리하던 대표적인 요충지에 정치·군사적 방어기능을 목적으로 축조된 관방시설로 기능하기 시작하여 세금을 수납하여 보관하던 창성 및 장시 등 사회·경제적인 기능으로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시대적 한정성과 사례의 희소성이 돋보이는 복합유산으로 평가됨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사적

○ 명칭 : 여수 석보(麗水石堡)

- 지난 제4차 회의('12.4.18)때 결정된 바와 같이 역사적인 기록(《세조실록》 1457년(세조 3))에는 여수 석보(麗水 石堡)로 되어 있고, 보堡의 의미가 성곽의 의미도 포함되므로 여수 석보성이 아닌 여수 석보(麗水 石堡)로 명칭 변경

(3) 지정면적 검토

- 기 전라남도 기념물 제106호로 지정된 지역(77,393m²)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문화재와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문화재위원>

- 석창성(石倉城)은 입지의 여건, 잔존유적의 현황, 그리고 석보(石堡)로서의 독창성을 지닌 유적으로, 그동안 사유지매입과 2차례의 발굴조사와 최근에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유적의 성격을 확인하였음.
- 처음에는 군사적인 방어위주의 석보(石堡)에서 출발하여 세월이 경과하면서 관청용 물자비축의 창고(倉庫)기능, 또한 한때는 장시(場市)기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더욱 주목되는 유적임.
- 성곽의 주요 기본시설인 성문(城門)과 성벽(城壁) 그리고 성 내외(內外)의 건물지(建物址)는 물론 연지(蓮池), 우물지(井址), 그리고 해자(垓子)에 이르는 모든 유구가 많이 확인되어 유적의 성격이 파악되었음.
- 유적의 활용적 측면에서 입지여건상 접근의 편의성과 정비 후의 활용성 등을 감안한다면,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도 좋을 것으로 봄.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등>

- 여수 석보는 전라도 육군이 수자리하던 대표적인 요충지에 축조된 성곽시설로서 당시 관방체제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됨.
- 또한 15세기 중반 평면 방형의 형태로서 대형의 판석재로 세워쌓기한 점, 성벽과 동·서·남문 등 3개소의 성문, 그리고 남문지 동쪽에 1개소의 적대만으로 구성된 평면 배치형태를 갖추고 있어 조선시대 성곽 가운데 새롭게 확인된 성곽유형 육군진보성으로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임.
- 그리고 체성부와 해자의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석보石堡에서 창성倉城으로의 변화와 이후 장시場市로 기능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경제적인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시대적 한정성과 희소성이 돋보이는 사례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여수 석보를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사항

(1) 추진경과

- '01.07.18 ~ '02.01.18 : 제1차 발굴조사(명지대, 전남대, 순천대 공동 조사)
- '02.03.19 :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신청
- '02.05.10 : 문화재청 회신(보고서 결과 토대로 사적 지정여부 검토)
- '03.09.15 :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재신청
- '04.05.25 : 문화재청 회신(추가 발굴 및 학술조사 통한 특징 규명 필요)
- '07.01.03 ~ 05.02 : 제2차 발굴조사[(재)남도문화재연구원]
- '08.12.02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승격 재신청(여수시 → 도)
- '09.09.04 :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승격 신청 가결)
- '09.11.10 : 문화재 구역 재검토 요청(전라남도 → 여수시)
- '10.08.16 : 사적 지정 신청 보완자료 제출(여수시 → 전라남도)
- '10.11.26 : 사적 지정 신청(전라남도 → 문화재청)
- '11.05.04 : 사적 지정 검토 관련 사적분과위원회 현지조사
 - '석보(石堡)'로서의 위상이 명확해져야 하므로 학술세미나를 통해 학술적 규명 필요
 - 성벽 등이 잘 남아있으므로 잡목 제거하여 노출시키고 관람로 확보
- '11.12.09. : 학술대회 개최(주제 : 여수석보의 종합적 검토)
- '12.03.14. : 국가지정문화재 보완자료 제출(학술대회 자료 등)

(2)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의견(2009. 9.4.) : 사적 지정 신청 가결

- 여수 석보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함.
 - 여수 석보성은 순천도호부-전라좌수영 등 육지부와 해안부를 잇는 결정점에 입지하여 역사 지리적으로 중요한 유적으로서 네 모서리를 말각 방형으로 수축한 조선시대의 평지성으로 특징적인 유적임.
 - 조선시대 초기 성종때부터는 해안 방어의 일환으로 수군진성이 축조되는데, 석창성은 그 이전 시기의 석보(石堡)의 성축 시설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여타의 수군육군영진성류와는 다른 역사성 있음.
 - 문이 3개소인데 당초에 방어와 치소 기능의 성이었는데 창고 기능으로 변화되면서 서문지가 폐쇄되었고, 내부 연못지는 성의 가장 낮은 쪽에 해당하는 서벽 부근에서 확인되었으며, 성벽을 지나 해자로 연결되는 출수구(出水口)의 구조가 특이하는 등 학술가치가 있음.

(3) 지자체에서 실시한 관계 전문가 조사의견

○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

- 여수석보는 군사시설로서의 성격과 함께 여수현의 옛 치소를 보호하는 읍성적(邑城的) 성격도 아울러 지닌 특이한 성보(城堡)로서 쉬이 찾아보기 힘든 유적임

여수지역에 전라좌수영성과 돌산진성 및 방답진성이 잇따라 축조되면서 육수군에서 운용하던 방어시설이 그 기능을 수군진으로 이관한 특이한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유적을 보호할 가치가 충분함

○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

- 평면형태와 부대시설의 배치, 축성기법에서 나타나는 여수석보성의 특징들은 15세기 중반의 성곽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성곽사의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며, 여수석보성은 전라도 육군이 수자리하던 대표적인 요충지에 축조된 관방시설로서 기능하기 시작하여 세금을 수납하여 보관하던 창성 및 장시 등의 사회·경제적인 기능으로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시대적 한정성과 사례의 희소성이 돋보이는 복합유적으로 평가됨

○ 경상남도 문화재전문위원 ○○○

- 여수석보성은 당시 왜구에 대한 방어체제의 변화와 관방시설의 재정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역사성이 있는 성곽으로 조선시대 일반적인 성곽의 구조와는 다른 특징적(성곽의 축조수법이 평지 석축성으로는 유례가 없는 것)인 성으로 평가되므로 조선시대 관방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유적으로서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되어야 하며, 향후 역사교육의 장으로써 관광과 연계하여 한층 더 그 가치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밭대학교 ○○○ 교수

- 여수석보성은 육군진보로서 방형의 평지성을 갖추고 있고, 관방시설에서 창성 및 장시의 기능으로 변화하는 점, 네 모서리를 말각으로 처리한 점, 배수로 및 수구의 축조수법 등 여러 가지 특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어 성곽사에 있어서의 학술적인 가치가 크다고 하겠음

(4) 학술대회 개최결과 요약

○ 주 제 : 여수석보(麗水石堡)의 종합적 검토

○ 일시/장소 : 2011. 12. 9.(금) 10:00~18:00/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 주최/주관 : 여수시/(사)한국성곽학회

구 분	제 목	발표자	토론자
기조강연	남해안 지역 관방유적(진보)의 성격	○○○	-
제1발표	여수 석보의 설치와 변화	○○○	○○○
제2발표	남해연안 진보성 축조수법연구	○○○	○○○
제3발표	여수 석보(석창성) 발굴의 성과와 특징	○○○	○○○
제4발표	여수 석보(석창성)의 가치와 정비방안 검토	○○○	○○○
제5발표	여수 석보(석창성)의 보존 정비 및 활용방안	○○○	○○○
종합토론		좌장 ○○○	

○ 종합내용

- 여수석보는 15세기 중반 전라도 육군이 수자리하던 대표적인 요충지에 정치·군사적 방어기능을 목적으로 축조된 관방시설로 기능하기 시작하여 세금을 수납하여 보관하던 창성 및 장시 등 사회·경제적인 기능으로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시대적 한정성과 사례의 희소성이 돋보이는 복합 유산으로 평가됨
- 또한 평지부에 방형으로 축조한 육군진보성으로는 유일하며, 조선시대 성곽 가운데 새롭게 확인된 성곽유형을 보이는 점, 전 구간에 걸쳐 첫째 단을 세워쌓기한 점, 대형 지대석을 사용한 점 등 다른 성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성곽사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5)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면적: 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	전남 여수시 여천동	868	사	5,468	5,468		
2	"	875	사	982	982		
3	"	796	답	519	519		
4	"	797	전	112	112		
5	"	798-1	전	450	450		
6	"	798-2	전	205	205		
7	"	800-1	대	258	258		
8	"	800-2	대	132	132		
9	"	800-4	대	50	50		
10	"	801	대	198	198		
11	"	802-1	전	324	324		
12	"	802-2	전	274	274		
13	"	802-3	전	810	810		
14	"	802-4	전	641	641		
15	"	802-5	전	1,322	1,32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6	"	802-6	전	450	450		
17	"	802-7	전	942	942		
18	"	802-8	전	790	790		
19	"	803-1	대	400	400		
20	"	803-2	전	463	463		
21	"	804-1	전	145	145		
22	"	804-2	전	410	410		
23	"	804-3	전	198	198		
24	"	804-4	전	793	793		
25	"	804-5	전	284	284		
26	"	804-6	전	407	407		
27	"	804-7	대	132	132		
28	"	804-8	답	602	602		
29	"	804-9	답	592	592		
30	"	804-10	답	1,907	1,907		
31	"	804-11	답	198	198		
32	"	804-12	전	182	182		
33	"	804-13	전	549	549		
34	"	804-14	전	793	793		
35	"	804-15	대	466	466		
36	"	804-16	답	218	218		
37	"	804-17	답	1,260	1,260		
38	"	804-18	답	945	945		
39	"	804-19	답	294	294		
40	"	804-20	답	565	565		
41	"	804-21	전	2,109	2,109		
42	"	805	답	169	169		
43	"	806	답	536	536		
44	"	807	대	294	294		
45	"	808-1	답	1,183	1,183		
46	"	808-2	전	288	288		
47	"	808-3	답	1,570	1,570		
48	"	808-4	답	1,279	1,279		
49	"	808-5	답	1,283	1,283		
50	"	809	답	254	254		
51	"	810	답	222	222		
52	"	811	답	1,349	1,349		
53	"	812	답	539	539		
54	"	813-1	답	258	25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55	"	813-2	답	208	208		
56	"	813-3	전	79	79		
57	"	871-9	도	2,655	2,655		
58	"	424	전	136	136		
59	"	424-1	전	63	63		
60	"	424-2	도	3	3		
61	"	425-1	대	227	227		
62	"	425-2	대	284	284		
63	"	425-3	전	711	711		
64	"	425-4	도	1	1		
65	"	426	전	962	962		
66	"	427	전	519	519		
67	"	429	전	499	499		
68	"	430	전	516	516		
69	"	431	답	964	964		
70	"	791	답	1,474	1,474		
71	"	792	전	2,066	2,066		
72	"	793	답	1,567	1,567		
73	"	794	전	436	436		
74	"	795	전	109	109		
75	"	799	대	288	288		
76	"	799-1	대	354	354		
77	"	861-11	구거	565	565		
78	"	861-51	구거	107	107		
79	"	880-7	답	1,210	1,210		
80	"	880-8	답	2,192	2,192		
81	"	880-9	답	1,537	1,537		
82	"	880-10	답	1,428	1,428		
83	"	880-11	답	3,382	3,382		
84	"	882-1	답	3,055	3,055		
85	"	883-6	답	369	369		
86	"	892-1	구거	1,261	1,261		
87	"	894-1	도	94	94		
88	"	880-1	답	135	135		
89	"	880-2	답	1,486	1,486		
90	"	880-3	답	1,055	1,055		
91	"	880-4	답	664	664		
92	"	880-5	답	1,567	1,567		
93	"	880-6	답	1,150	1,15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94	"	880-30	답	662	662		
95	"	880-31	잡	264	264		
96	"	880-32	도	829	829		
97	"	880-34	답	205	205		
98	"	880-35	답	21	21		
99	"	880-36	답	6	6		
100	"	881-4	답	298	298		
101	"	881-5	답	644	644		
102	"	881-6	답	796	796		
103	"	881-20	답	496	496		
104	"	881-21	답	198	198		
105	"	881-27	답	48	48		
106	"	881-29	답	485	485		
계		106필지		77,393	77,393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3. 삼척 준경묘 · 영경묘 사적 지정

가. 제안사항

강원도 삼척시 소재 강원도 기념물 제43호 「삼척 준경묘 · 영경묘」의 국가 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삼척 준경묘는 조선 태조의 5대조인 양무장군(목조의 아버지)의 묘이고, 영경묘는 그의 부인 이씨의 묘로서 비록 왕의 능침은 아니지만 조선왕조가 인정한 선조의 묘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해당지역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자 함
- 동 건은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12.4.18)의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한 후 심의사항으로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간('12.4.26~5.25)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2건 (바. 참고사항-(6) 참조)

제출자	의견제출 주요내용	검토의견
이○○ (준경묘 · 영경묘 봉향회)	사적 지정예고의 지정 사유 중 『...삼척 영경묘는 <u>평창이씨의 능묘로...</u> 』 부분에서 <u>평창</u> 이라는 관향 삭제 요청	○ 현재 영경묘 비각 내에 있는 비석 표기 내용, 전주이씨 대관 선원선계 등의 내용을 고려해볼 때 당시에는 관향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고, 양무장군의 부인이 이씨 외에는 확실한 고증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영경묘를 <u>평창 이씨의 묘</u> 라는 표현 대신에 <u>양무장군의 부인 이씨의 묘</u> 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 (준경묘 · 영경묘 봉향회)	※ 문화재청 공고(제 2012-141호, 2012.4.26.)	※ 현재 영경묘 비각 내에 있는 비석인 《大韓永慶墓》 비 후면 음기에 『...穆祖皇妣李氏...』라 표기되어 있음. ※ 전주이씨 대관(p 172) 선원 선계(璿源 先系)에서 이양무를 설명 하면서 부인을 관향없이 『배위 이씨(配位李氏)』라 설명 하고 있음 (전주이씨 대관, (재)전주이씨대동종약원,2000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삼척 준경묘·영경묘(강원도 기념물 제43호/1981.08.05.지정)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149번지 외 5필지
- (3)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 대상 : 삼척 준경묘·영경묘(三陟 濬慶墓·永慶墓)
 - 신청 면적 : 6필지(65,154㎡)
- (4) 관리단체 : 강원도 삼척시
- (5) 신청사유
 - 삼척 준경묘·영경묘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주산을 뒤로 하고, 좌우측에는 청룡·백호를 이루고 앞쪽으로는 멀리 안산을 바로보는 최고의 명당 지역으로 이들 묘는 조선왕조 태동지로서의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史蹟)로 지정 신청하고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12.04.13/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1) 문화재 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149, 산150에 입지하는 준경묘는 우리나라 시조 산인 백두산에서 이어 온 태백정맥의 영산인 동해·삼척 지구의 두타산(무릉계곡)을 주산으로 하는 곳으로 준경묘는 두타산의 3맥(脈)이 입지하고 있음. 좌청룡우백호 등 풍수적 사신사사가 잘 보전되어 건좌향(乾坐向)하여 입지하고 있음.
- 삼척시 미로면 하사전리 산53에 입지하는 영경묘는 태백정맥의 동해·삼척 지구의 두타산(무릉계곡)을 주산으로 하며 두타산의 제일국 맥(脉)에 입지하고 있으며 준경묘와 십리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음. 좌청룡·우백호 등 풍수적 사신사사가 잘 보전되어 묘좌향(卯坐向)하여 입지하고 있음.
-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98과 97-1에 입지하는 영경묘·준경묘 재실은 활기리의 중심 언덕에 위치하며 앞면 아래에 활기천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 조선후기의 재실형태를 갖추고 있음.
-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92에 입지하는 목조대왕 구거유지는 잡종지로 활기리 활기천 우측도로와 인접하며 준경묘와 영경묘 재실과 1.5km 떨어져 있으며, (구)천기초등학교 활기분교(현 폐교)에 입지함.
- 영경묘와 준경묘는 조선왕조의 태조인 이성계의 5대조 부모의 묘역으로 목조의 부모의 능묘임. 이 능묘는 조선왕실(대한제국)의 선대의 조상의 신위를 모시는 선원전(璿源殿)에 전주이씨 시조 사공공(司空公) 다음에

모시는 분임. 즉 이태조의 5대조 중 가장 윗대에 해당하며 선원보감(璿源寶鑑)에 시조묘인 시조사공공릉(始祖司空公陵) 다음에 기록되어 보존되고 있는 중요한 지역임.(선원보감)

- 이 묘역은 고종대에 국호를 대한제국(1897)으로 바꾸면서 태조 이성계의 5대조를 봉양하기 위해 원조(遠祖)추승사업(광무3년, 1899년 4월16일)으로 이루어진 조선왕실의 중요한 능묘임.
- 준경묘와 영경묘는 남한에 있는 조선왕조의 최고의 조상묘로서 가치를 갖고 있는 묘역임. 북한 함경도의 목조(穆祖,德陵安陵), 익조(翼祖,智陵,淑陵), 도조(度祖,義陵,純陵), 환조(桓祖,定陵和陵)의 4대조의 능묘와 함께 보존되어 온 능역임.
- 이곳은 기 지정된 조선왕릉 40기의 세계문화유산과 더불어 앞으로 연산군묘, 광해군묘, 북한 개성의 제릉(齊陵)과 후릉(厚陵) 그리고 태조의 4대조인 함경도 6기의 능과 더불어 추가로 조선왕실에서 봉양해 온 선원전의 유산을 추가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 자원 중의 하나임.

○ 연혁 유래 및 특징

- 준경묘·영경묘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건국 후 선대 5대조의 묘를 찾기 위해 어명을 내려 찾을 때 이곳을 비롯하여 노동·동산지역 위치설, 위천 부근 위치설, 태백산 황지 부근 위치설로 여러 지역이 정조때까지도 기록 및 구전으로 거론되었으나(조선왕조실록 등) 의견이 분분하여 조선시대 내내 어느 곳이 확실한 선대의 묘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고종시대인 광무3년(1899) 4월 16일에 비로서 고종이 공식적인 선조의 묘로 추봉하여 묘와 재각 및 비각 등을 수축·정비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준경묘는 조선의 단릉의 형태로 건좌을향(乾坐乙向)하여 이루어져 있으며 강원도 오지에 입지하여 천연의 자연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풍수적 사신사가 잘 보존되어 있음.
- 고종 때 추봉되면서 만들어진 두단의 석축의 단위에 봉분이 있으며, 정청(제례청), 비와 비각, 수라간 터, 산신석, 어로, 홍살문 등이 있음. 홍살문은 추후에 수리된 것으로 추정됨. 일반 조선왕릉과 달리 제례청(정청)은 있으나 배위청이 없는 앞면 3칸 옆면 1칸의 일자형 건축이 특이함.
- 영경묘는 조선의 단릉의 형태로 묘좌신향(乾坐乙向)하여 이루어져 있으며 풍수적 사신사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양계의 계류를 끼고 급경사지에 교묘하게 자리잡은 특이한 형국을 이루고 있는 지형임. 따라서 제례청

(정청)이 좌청룡능선아래에 입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정청, 배위석, 신로, 수라간터, 비각등이 존치되어 있음.

- 이곳은 묘역을 조영할 당시의 이야기인 백우금관(白牛金棺)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정기가 백두산을 거쳐 오대산을 거쳐 명산인 두타산의 지맥에 자리 잡고 있어 정기가 강한 명당으로 평가되며 조선 왕조의 태동을 비롯하여 500여년의 왕조의 이어움을 알 수 있는 지역임.
- 준경묘와 영경묘 지역의 송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소나무로 황장목으로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는 목재임. 이곳의 송림은 일부 간벌하여 궁궐건축과 문화재 복원 목재로 사용되고 있음. 최근에는 승례문 복원시 이곳 준경묘의 용맥 능선의 일부 간벌 소나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함.
- 준경묘와 영경묘 일원의 소나무 숲은 2005년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숲”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역사문화생태자원임.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사적
- 명칭 검토 : 삼척 준경묘·영경묘(三陟 濬慶墓·永慶墓)
 - 해당 유적지가 삼척시에 있고 현 지방 기념물인 “삼척 준경묘·영경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지정면적 검토

-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강원도 기념물 지정범위 (65,154m²)를 사적 지정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등>

- 삼척 준경묘·영경묘는 조선왕실의 최고의 선대(이태조 5대조이며 목조의 부모의 묘, 선원전 추봉된 신위; 선원전 및 선원보감 참조)의 능원으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능원이며, 조선 왕실에서 관리하던 능·원·묘 중 유일하게 사적으로 지정되지 못한 지역임.
-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생태적, 풍수적 가치를 인정받는 곳으로 사적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향후 남한의 연산군묘와 광해군묘, 북한의 제릉과 후릉 그리고 함경도의 4대조 능원과 더불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추가 지정되어 완성된 조선왕릉의 연속유산(선원전 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적 문화유산임
- 현재 이곳의 송림 등의 생태자원은 조선왕실의 생태자원 보존(조선의 각종 역사경관림 복원에 이곳의 종을 받아서 사릉관리소에 번식하여 (조선왕실

생태자원 보존소) 중의 보존을 하고 있다는 점이 세계유산위원회와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등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음.

- 따라서 준경묘·영경묘역과 채실, 목조(穆祖)의 구거유지의 국가사적화가 필요하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고 주변의 역사경관 및 자연자원의 보존을 극대화하며 주변의 석회암(시멘트)개발, 무분별한 남벌과 개발, 석산개발 등에 의한 경관 훼손 및 산불 방지 등 적극적 보존을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하며 영구적인 보존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삼척군에서 신청한 지역은 기존의 문화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역 중 일부 핵심지역만 신청하고 있어 역사경관립과 생태자원 등의 보존을 위해 현 신청 사적지보다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조선왕릉 등은 대체로 능역전체(사신사 보존)를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차후 세계문화유산 등재시(四神砂 보존을 중요시 함)에도 유리한 것으로 사료됨.
- 결국 준경묘·영경묘의 묘역과 채실, 목조대왕구거지 등은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의 능묘로 조선왕실 최고의 지역으로 추봉된 지역이며 남한에 있는 최고 능묘임
이곳은 조선왕실에서 관리하던 능·원·묘 중 유일하게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지 못한 지역으로 이들을 조선왕실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묘역 주변의 자연 및 역사경관립을 보존하고, 그 가치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후손에게 교육하는 차원에서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필요함 아울러 삼척시에서 신청한 구역보다 확대하여 용맥(龍脈)의 보존 및 내외 사신사(內外四神砂) 보존을 위한 확대 지정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추후 세계문화유산으로의 전략적 국가사적 지정이 요구됨

마. 참고사항

(1) 추진경과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신청(1차 : 삼척시⇒강원도) : 2005. 07. 11.
- 삼척 준경묘·영경묘 학술조사 용역 시행(2008.12.16. ~ 2009.03.16. 강원대)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신청(2차 : 삼척시⇒강원도) : 2009.11.02
- 도 문화재위원회 사전심의 : 2010. 03. 30.(사적으로 문화재청에 신청)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신청(강원도⇒문화재청) : 2010. 04. 08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신청 서류보완 통보 : 2010. 04. 29
- 문화재 보존정비·활용계획 용역 : 2010.11.09. 2011.02.16./한국지식산업연구원
- 학술 심포지엄 : 2011. 10. 28.(삼척 준경묘, 영경묘 역사문화가치 조명과 활용)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완자료 제출 : 2012. 2월

(2)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의견 : 사적 지정 신청 가결(2010.3.30)

- 삼척 준경묘, 영경묘는 남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왕실 최고의 묘로서 조선 왕조 태동의 발상지로서의 역사성 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적·경관적 가치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됨

(3) 지자체에서 실시한 관계 전문가 조사의견

○ ○ ○ ○ (경북대 교수)

- 준경묘와 영경묘는 조선왕실의 능원 가운데 유일하게 사적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역사적으로, 자연경관상으로 그리고 풍수지리학상으로 사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최근 유네스코에서 조선시대 왕릉을 일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것보다 맥락을 같이하며 사적으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봄

○ ○ ○ ○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강원대 교수)

- 조선의 태동을 알려주는 곳으로 백우금관 전설에서 볼 수 있듯이 풍수 지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역사적, 건축사적, 경관적 가치 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묘역 주변의 자연 및 역사문화공간을 보존하고, 그 가치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후손에게 교육하는 차원에서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필요함

○ ○ ○ ○ (문화재청/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강원대 교수))

- 준경묘·영경묘는 남한 최고의 조선왕실 능묘로서 일반적으로 조선의 능묘(왕의 능침이 아니더라도)가 국가문화재인 ‘史蹟’으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준경묘·영경묘는 실제 조선의 왕은 아니더라도 조선의 태동을 잉태한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가치성이 충분하고, 현대에 와서 새삼 찾아낸 것이 아니고 이미 1백여년 전에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여 최종 확정·정비되어 관리해 온 만큼 ‘사적’으로의 지정 가치가 충분히 있음

또한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태종 후궁 명빈김씨묘 등 여러 후궁의 묘조차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선왕조 창건자의 5대조라는 사실 외에도 가문의 이동 경로에 대한 기록을 뒷받침하는 중요자료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사적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4) 학술대회 개최결과 요약

- 주제 : 삼척 준경묘·영경묘 역사문화가치 조명과 활용방안 심포지엄
- 일시/ 장소 : 2011.10.28./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제5공학관 대강당
- 발표내용 및 담당자

제 목	발표자(당시 소속)
삼척 준경묘·영경묘 역사문화가치 조명과 활용방안 심포지엄에 즈음하여(기조연설)	○○○ (상명대학교 교수/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삼척 준경묘·영경묘의 역사적 고찰	○○○(강원대 교수)
준경묘 전설과 천명사상	○○○(한림대 명예교수/강원도 문화재위원)
삼척 준경묘·영경묘 보존정비 및 활용기본계획	○○○(강원대 교수/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
삼척 준경묘·영경묘의 풍수지리적 입지와 현대적 의의	○○○(강원대 교수)

○ 종합내용

- 준경묘·영경묘는 조선건국의 역사적 스토리와 생태환경,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조선왕릉이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준경묘·영경묘도 추가하여 등재할 필요가 있음

(5)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면적: 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미로면 활기리	산149	임	22,413	22,413			준경묘
2	미로면 활기리	산150	임	11,405	11,405			준경묘
3	미로면 하사전리	산53	임	24,000	24,000			영경묘
4	미로면 활기리	92	잡	2,139	2,139			목조대왕구거유지
5	미로면 활기리	97-1	전	4,572	4,572			재실
6	미로면 활기리	98	대	625	625			재실
계	6필지			65,154	65,154	☞ 국유지(문화재청) : 65,154m ² (100%)		

(6) 지정 예고 시 제출 의견

번호	접수 일시	제출자	소속	의견제출 주요내용	검토의견
1	2012. 04.30.	이○○	(사) 전주이씨대동종약원강원도지원 준경·영경묘봉향회담당 부지원장	사적 지정사유 중 『...삼척 영경묘는 평창이씨의 능묘로...』 부분에서 평창이라는 관향 삭제 요청	○ 현재 영경묘 비각 내에 있는 비석 표기 내용, 전주이씨 대관 선원선계 등의 내용을 고려해볼 때 당시에는 관향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고, 양무장군의 부인이 이씨 외에는 확실한 고증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u>영경묘를 평창 이씨의 묘 라는 표현 대신에 양무장군의 부인 이씨의 묘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u> ※ 현재 영경묘 비각 내에 있는 비석인 《大韓永慶墓》 비 후면 음기에 『...穆祖皇妣李氏...』라 표기되어 있음. ※ 전주이씨 대관(p 172) 선원 선계(璿源 先系)에서 이양무를 설명 하면서 부인을 관향없이 『배위 이씨(配位 李氏)라 설명하고 있음 (전주이씨 대관, (재)전주이씨대동종약원,2000년) ※ 전주이씨경영군과세보 璿源世系에서 이양무 부인이 관향이 없이 이씨(李氏)로 표기되어 있음 ※ 매년 4월20일 영경묘 제향시 사용하는 축문(祝文)에서 『... 先祖妣 李氏 尊靈...』으로 표기하고 있음 ※ 문화재청 홈페이지 “우리지역문화재”에서 준경묘·영경묘를 소개하면서 『영경묘는 양무장군의 부인 이씨의 묘이다』라고 표기하고 있음 <삼척시 의견> ○ 상기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중(제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향을 표시하지 않고 이씨(李氏)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2012. 5.16.	이○○	준경묘·영경묘 봉향회장	※ 문화재청 공고(제2012-141호, 2012.4.26.)	○ 상기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중(제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향을 표시하지 않고 이씨(李氏)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비문 등 고증자료 검토 후 지정

4.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외 공영주차장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외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본 건은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2차 회의시(2.8)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건축규모, 건물높이, 지붕, 외부마감재 등을 변경하고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중구 등
- (3) 신청내용<공영주차장 신축>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432번지 1909호 등(문화재보호구역 내외)

당초 신청('12.2)	금회 신청
-건축면적 : 1,076.26㎡	- 건축면적 : 좌동
-연 면 적 : 2,149.72㎡	- 연 면 적 : 2,957.16㎡<증 807㎡>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2층<증 지하1층, 감 지상1층>
-건물높이 : 10.48m	- 건물높이 : 10.30m<감 0.18m>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구 조 : 좌동
-주차대수 : 62대(지하1층 29대, 지상1층 33대)	- 주차대수 : 76대(지하 52대, 지상 24대)
-용 도 :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 용 도 : 좌동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 의견('12.02.03/문화재위원 ○○○,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중구 신당동 소재의 한양도성과 연결한 주택지를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10.48m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주민의 공약을 위한 점은 인정되나, 그 높이가 연접 성곽보다 높고 평슬라브, 화강석 외부마감 등을 고려할 때,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축물의 높이를 성곽선보다 낮게 조정하고
- 벽체와 연결된 경사지붕 등을 조정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후 사업 시행

지상68.2m 의 국기계양대를 설치하며 20m×20m의 태극기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감은사지의 성격과 역사문화환경에는 어울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사적지의 역사성 및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6.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 교회 승강기 증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에서 교회의 승강기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 고분군」 주변에서 교회의 승강기 증축을 위하여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금척리 고분군(사적 제43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 외 일원
- (3) 신청내용<승강기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525(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300m 이격 /2구역(경사7.5m이하))
 - 사업내용
 - 승강기 규모 : 지상2층 / 1동
 - 승강기 면적 : 48.50㎡(지상1층 24.75, 지상2층 23.75)
 - 승강기 구조 : 철골조 위 후동석·화산석 및 복합판넬 마감
 - 승강기 최고높이 : 8.0m(기존 건축물 최고높이 : 8.85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6.05/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
 - 본 건은 경주 금척리 고분군에서 서측으로 270m 이격된 금척교회 건물에 금척리 고분군 반대방향으로 8m 높이의 엘리베이터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며 금척리 고분군에서 인지되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7. 경주 명활성 주변 탐방로 개설 및 관리사 개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주변에서 탐방로 개설 및 관리사 개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주변에서 탐방로 개설 및 관리사 개축을 위하여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명활성(사적 제47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보문동 일원

(3) 신청내용<탐방로 개설 및 보문호 관리사 개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천군동 산14-1 외 39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탐방로 규모 : L=1,300m, B=2~3m

- 토 공 : 흙깎기 447m³, 흙쌓기 410m³, 자연석쌓기 456m², 호안돌 붙임 6,000m², 벌개제근 2,800m² 등

- 포장공 : 점토벽돌 1,366.9m², 황토경화 3,122.3m², 경계석 786.5m, 사고석경계석 100m

- 시설물공 : 산석쌓기 87.2m, 목재웬스 716.5m, 게이트형트래리스 2개소, 데크계단 1식, 데크포장 2식, 그늘시렁 4개소 등

- 식재공 : 소나무(H5.5xW2.5xR25) 1주, 소나무(H5.0xW2.5xR20) 3주, 느티나무(H4.5xR20) 18주, 배롱나무(H3.0xR10) 19주, 왕벚나무(H3.0xB6) 200주, 관목류 31,580주, 초화류 및 잔디 등

- 보문호 관리사 개축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한식토기와지붕
- 건축규모 : 지상1층, 1동
- 건축용도 : 보문호 관리사
- 최고높이 : 5.1m
- 건축면적 : 53.52m²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06.0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경주 명활성에 위치한 보문호수 주변에 기존 탐방로와 연계하여 1.3km의 탐방로를 점토벽돌과 황토경화포장으로 조성하고 기존 불량 관리사를 전통 건축 형태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현 명활성과 보문호수 사이를 지나는 도로보다 낮게 구성되어 명활성에서 인지되지 않고 성절토가 거의 없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8. 고양 행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행주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신○○
-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행주산성(사적 제56호)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일원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7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7m 이격)
 - 내용
 - 사업면적 : 378.13m², 건축/연면적 177.78m²/246.02m²
 - 지상2층, 최고높이 9.6m(처마높이 6.2m), 주차3대, 철근콘크리트조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6.07/문화재위원 ○○○)
 - 신청지는 전통가옥이 형성되었던 지역이나, 현재는 일부 중·개축된 건물도 함께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신청 건물은 기준안에 의거 현상대로 보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단층 전통가옥의 외형을 갖추는 형식으로 검토함이 좋겠음(건물평수가 다소 크다고 봄)
 - 인접한 지역의 전통가옥은 조사하여 가치성 평가가 필요한 한옥이 있음(장씨가옥)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9. 경복궁 주변 건물(일본 대사관)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주변에서 건물(대사관)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복궁 문화재구역에서 약 90여m 이격된 곳에 기존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높이 약 23.45m)을 철거 후 신축(지하 3층, 지상 6층/높이 약 35.80m)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17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등
- (3) 신청내용<건물 신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8-11 번지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90m 이격)
 - 허용기준 : 평지붕 14m 이하, 경사지붕 17m이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381.50m²
 - 건축면적 : 1,413.16m²
 - 연 면 적 : 11,358.86m²
 - 규 모 : 지상 6층, 지하 3층/높이 약 35.80m(평지붕)
 - 용 도 : 공공업무시설(일본 대사관)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10. 창경궁 문화재보호구역 내외 주택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3호 「창경궁」 문화재보호구역 내외에서 주택신축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경궁 문화재보호구역 내외에서 기존 주택(지상 2층) 철거 후 주택을 신축(지상 4층+옥탑)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정○○
- (2) 대상문화재명 : 창경궁(사적 제123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 (3) 신청내용<주택 신축>
 - 위치 : 서울 종로구 명륜3가 1-221번지(보호구역 내외)
 - 허용기준
 - 4구역(보호구역 외곽) : 평지붕 14m이하, 경사지붕 17m이하
 - 공통사항 : '창경궁 동북측 지역(문묘 인접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창경궁 지정·보호구역에 설치된 담장 높이보다 낮게 건축물 높이를 제한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46.42㎡
 - 건축면적 : 139.76㎡
 - 연면적 : 365.16㎡
 - 규모 : 지상 4층+옥탑(건축높이 약 13.5m(평지붕))
 -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06.04./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창경궁의 동측 담장에 연접하는 2층 규모(약 8m 정도)의 주택을 지상 4층 규모(높이 : 13.5m, 평지붕)로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상 변경허용기준에서 창경궁과 문묘 주변은 담장보다 낮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부지 내에 창경궁의 보호구역이 6m정도 포함되어 있는 현황임
- 창경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고시된 보호구역 내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궁의 담장보존을 위해서도 담장 및 토단을 일체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창경궁의 연접담장보다 낮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궁능문화재과 검토의견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종로구 명륜동 3가 1-221번지 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은 창경궁 궁장의 안전성 확보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신청 지번은 문화재 복원 지역은 아님)
- 동 지번 중 위 문화재 보호구역을 벗어난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3) 신청인의 문화재보호구역 고시도면 정정요청 민원

- 신청인은 신청필지의 고시면적과 고시도면의 불일치를 사유로 문화재보호 구역 고시도면 정정민원을 제기하여('12.4월), 궁능문화재과에서 검토 중
 - 민원내용 : 2008년 문화재구역 일괄조정시 지번별 고시면적보다 고시도면이 더 넓게 표시됨(공고시 174m² → 고시시 55m²으로 변경)
 - 조치현황 : 궁능문화재과(창경궁)에서 검토 중

마. 의결사항

- 부결
 - 창경궁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11. 강화 삼랑성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교통정체 해소 등 도로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간선도로 개설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삼랑성(사적 제130호)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 4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도시계획도로 개설>
 - 위치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350m 이격)
 - 사업내용
 - 연장 0.7km, 폭 15m
 - 성토고 : 0~3m, 절토고 : 0~1.45m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의견
 - 위 신청지는 사적 제130호 '삼랑성'과 400m~500m이상 이격된 곳으로 현상변경허용기준 5구역(그외지역)임.
 - 최고 절토는 1.45m밖에 되지 않으나 최고 성토고가 3.0m가 되어 공통사항(절·성토는 2m이하로 함) 내용에 벗어나 허가신청하는 사항임.
 - 이미 문화재와 사업대상지 사이에는 많은 도로 및 건물들이 개설되어 있는 주거,상업 지역이고 문화재가 산 능선에 위치함으로 사업을 시행하여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2. 부여 궁남지 내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135호 「부여 궁남지」 내에서 부여 궁남지 정비 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본 건은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5차 회의(5.9)에서 ‘사적지의 장소성, 역사성 훼손’을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조명계획(위치, 수량)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궁남지(사적 제135호) 등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17 등
- (3) 신청내용<부여 궁남지 정비사업>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17 등(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 사업내용

당초 신청('12.5)	금회 신청
- 부지정지 : 880㎡(십터) - 식재 : 교목 45주, 관목 9,770주 - 시설물 : 파고라 외 6종 - 포장 : 황토포장 외 4종 - 조명 : 15종 704개 - 우수공 : 우수관 외 2종	- 부지정지 : 좌동 - 식재 : 좌동 - 시설물 : 좌동 - 포장 : 좌동 - 조명 : 12종 362개 - 우수공사 : 좌동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파고라 건축양식 검토
 - 수질개선(물순환) 처리

13. 언양읍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언양읍성 주변에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임
- 2012년 제4차('12.04.18) 회의 시 부결, 높이를 낮추어 재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서○○

(2) 대상문화재명 :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일원

(3) 신청내용<다가구주택 신축>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150-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80m 이격)

※ 현상변경허용기준상 3구역(언양읍성 복원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건축제한)

○ 사업내용

구분	1차신청('12.4.18)	금회신청	비고
대지면적	426㎡	좌동	
건축면적	243.04㎡	좌동	
연면적	657.98㎡	좌동	
최고높이	지상4층, 17m(승강탑포함)	지상4층, 14.4m(높이 2.6m 감)	
구조	경량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 주변 1-5층 건물이 형성되어있고 복원정비계획상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의

양각비율 (1:5)에 비추어 신청건축물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4. 북한산성 주변 대성암 석축보수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일원 소재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주변 대성암 석축 보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2년 1월 20일자 안전점검 결과, 신청대상지의 대성암 축대가 전도 및 붕괴 등 재난사고 우려가 있다는 통지를 받음
- 신도와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자연석으로 석축을 보수하고자 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홍○○
- (2) 대상문화재명 : 북한산성(사적 제162호)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일원(서울 은평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
- (3) 신청내용<대성암 석축보수>
 -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8m 이격)
 - 사업내용 : 면적 150㎡, 석축길이 51.6m, 석축높이 0.38~4.67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석축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통 쌓기 방식으로 시행

15. 구리 동구릉 내외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리시 도심하천 생태계 및 친수기능 증진을 위하여 검암산(동구릉) 일대 계곡수를 이용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 소재지 : 경기 구리시 인창동 산2-1 일원
- (3) 신청내용<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 위치 : 경기 구리시 인창동 68-2외 31필지(문화재구역 및 주변 500m이내)
 - 사업내용
 - 지하 저류조 매립 : $V=27\text{m}^3$, 면적 16m^2 , 굴착깊이 4m
 - 실개천 유지용수 관로 매립 : 연장 800m, 관련 100mm, 폭 1m, 깊이 1m (매립 후 원상복구)
 - 노출시설물 : 현장제어판(폭0.6m×길이0.5m×높이1.5m) (지하저류조 현장제어용)

라. 참고사항

(1) 궁능문화재과 의견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장소는 동구릉 능역 진입공간에 해당되며, 향후 「동구릉 능재복원 기본계획(2010.12)」에 의거 원지형 복원 후 전통수목 식재 및 외홍살문을 복원하여 조선왕릉의 역사성과 경관성을 회복할 계획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사업대상지가 동구릉 능제 복원 지역임

16. 김포 장릉 주변 단독주택 단지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주변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포 장릉 주변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 ‘김포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보존구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산141-1
- (3) 신청내용<단독주택 부지 조성>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산141-31번지 일대
 - 내용
 - 부지면적 : 84,840m²
 - 건축면적 : 3,196m²
 - 건물높이 : 4.75m(1층)
 - 건물규모 : 20개동

라. 참고사항

- (1) 궁능문화재과 의견(김포 장릉 보존관리 부서)
 - ○ ○ ○에서 신청한 단독주택 조성 예정부지는 김포 장릉 서쪽 외곽 경계에 인접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보존구역)과 2구역에 해당되어 향후 김포장릉 주변 경관과 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7. 홍릉과 유릉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홍릉과 유릉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이○○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홍릉과 유릉(사적 제207호)
 -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41-1
- (3) 신청내용<버섯재배사 신축>
 - 위치 :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20-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7m 이격)
 - 사업내용
 - 사업면적 1,192㎡, 건축/연면적 495.1㎡/495.1㎡, 높이 5.5m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의견('12.05.30)
 - 신청지는 홍·유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구역 '보존구역'이나, 주변에 신청건축물과 유사한 규모의 1층 주택, 창고 등이 있음
 - 신청지와 문화재 사이에 구릉이 형성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지역이며,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8. 남원 실상사 내 어린이집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남원시 소재 사적 제309호 「남원 실상사」 내 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원 실상사 내 어린이집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원 실상사(사적 제309호)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33-3 외
- (3) 신청내용<어린이집 신축>
 - 위치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39(문화재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규모 : 면적 255㎡, 높이 5m(1층, 상부 다락구조)
 - 구조 : 목구조(스토로베일 공법 또는 흙다짐 공법/경사지붕)

라. 참고사항 : 실상사의견

- 인근 마을(백일리, 중황리, 중기리, 대정리, 입석리)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함.
- 신청위치는 한 마을에 치우치지 않은 적합한 위치이며, 흙집 단층으로 계획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계획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실상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19. 경주 남산 일원 등 주변 자전거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서 자전거 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서 자전거 도로 개설을 위하여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남산1길 17 외
- (3) 신청내용<자전거도로 개설>
 - 위치 : 경북 경주시 남산동 309-1 외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40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L = 376, B = 2.15m
 - 토 공 : 터파기 144m³, 되메우기 39m³
 - 배수공 : 이중관로(Φ200mm) L=36.0m, 우수받이 6개소
 - 포장공 : 소형고압블럭 A=674m², 보차도경계석 L=384.0m, 도로경계석 L=376.0m
 - 부대공 : 1식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6.05/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
 - 본 건은 경주 남산 일원에서 60여m 이격된 곳으로부터 통일전 앞까지의 총길이 376m 구간에 도로 노선을 활용하여 폭 2.15m의 자전거 길과 인도를

조성하여 기존 자전거 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 상 절·성토가 없고 인터록킹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경주 남산 일원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단, 배수로 조성을 위해 굴착되는 곳은 시굴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행 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배수로 조성부지는 시굴조사 필요

20.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골프장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골프장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으로 2009년에 1차레 부결된 사항이나,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열미리 등
- (3) 신청내용<골프장 조성>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산58번지 등 17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0m 이격)
 - 내용

구 분	허가신청(1차, '09.11.11/ 부결)	금회 신청	비 고
부지 면적	458,059m ²	좌 동	사업부지를 당초보다 35m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
건축 면적	2동, 172.93m ²	1동, 109.35m ²	1동, 63.58m ² 감소
주차장	2,000m ²	좌 동	-
골프 코스	9홀, PAR36, 3,036m,	9홀, PAR35, 3,215m,	179m 증가
저류조	13,598m ²	10,026m ²	3,572m ² 감소
녹지	255,174m ²	318,811m ²	63,697m ² 증가
절토량 (1구역/전체)	180,027m ³ /1,440,836m ³	38,246m ³ /1,047,684m ³	141,781m ³ /393,152m ³ 감소
성토량 (1구역/전체)	267,276m ³ /1,258,198m ³	194,775m ³ /1,011,958m ³	72,501m ³ /246,240m ³ 감소

라. 참고사항

(1) 추진 경과

- 1989. 9.28 골프장 조성 사업계획 승인(태우관광개발)
 - 당초 행정 절차 과정에서 문화재 영향 검토 없이 건축 허가를 득함
- 1995.11.21 공사 착공 후 경영난에 따른 부도
- 2008. 9.25 경기관광개발 인수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 2009. 5.25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경기관광개발→한국문화유산연구원)
 - 사업부지 일부구간 표본발굴조사 및 현상변경 절차이행 회신(발굴제도과)
- 2009.10.2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로 부결(2009.11.11)

(2) 1차 신청시 현지조사 의견('09.11.04/문화재위원 ○○○)

- 첫째,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사적지 범위를 벗어나서도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으며 특히 '49전', '61-1전' 사이 계곡부에서도 백자편, 가마벽편, 도지미, 소토 등 가마운영과 관련된 많은 유물이 확인되었다.

둘째, 전반적으로 사적지와 골프장조성부지 경계는 경작지와 임야의 구분 선과 동일하다. 하지만 도요지는 그 구조 특성상 일정한 경사가 필요하므로 사적지 범위를 벗어나 골프장 예정지 쪽으로 일정 부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현장에서도 유물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면 본 사업으로 매장문화재의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환경 및 경관적 측면에서 골프장은 사적지의 바로 배후지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적지 및 유물 분포지에서 최소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복토와 절토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m 이상 절토되는 곳은 사적경계 및 유물 분포지에서 1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적지 사이 계곡부 안쪽에 계획 중인 'LAKE'는 유적과 가까이 위치할 뿐만 아니라 유적 상부에 대한 대규모 담수시설이어서 유적의 보존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계곡은 자연그대로 보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21. 서울 효창공원 주변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시 용산구 소재 사적 제330호 「서울 효창공원」 주변에서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본 건은 2012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회의(3.14), 제5차 회의(5.9)시 ‘역사문화 환경 훼손’ 사유로 부결된 바 있으나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100m 이내에 계획된 건물의 층수를 낮추어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박○○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효창공원(사적 제330호)
 - 소재지 :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2번지 외
- (3) 신청내용<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치 : 서울 용산구 효창동 3-250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5~58m 이격)
 - 허용기준 : 평지붕 17m이하, 경사지붕 20m이하
 -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 및 심의('12.3.14)	2차 신청 및 심의('12.5.9)	금회신청
건축면적	4,872.71㎡	4,872.71㎡	4,883.51㎡
연면적	51,610.83㎡	50,410.37㎡	50,391.20㎡
규모	○ 지하3층~지상15층 6개동 ○ 지하3층~지상9층 1개동 ○ 지상1층 1개동	○ 지하3층~지상14층 6개동 ○ 지하3층~지상9층 1개동 ○ 지상1층 1개동	○ 지하3층~지상15층 6개동 ○ 지하3층~지상9층 1개동 ○ 지상 1층 1개동
높이	48.9m	44.0m(100m 이내 약 29.5m)	46.90m(100m 이내 약 20.8m~23.7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3.07/문화재위원 ○○○,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서울 효창공원의 북측에서 58~85m 이격된 곳에 기존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불량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0~100m 범위 내는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2구역(평지붕 17m, 경사, 경사지붕 20m 이하)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에 8~11층 규모(28.6m~37.3m), 현상변경허용기준 밖인 100m~200m 내는 9~15층(31.5m~48.9m)의 규모로 계획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100m 이내의 구역에서는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고, 그 높이가 높아 서울 효창공원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22. 광주 신창동 유적 내 역사근린공원 리모델링

가. 제안사항

광주시 광산구 소재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내 역사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신창동 유적 내 역사근린공원 리모델링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신창동 유적(사적 제375호)
 - 소재지 : 광주 광산구 신창동 512-1 외
- (3) 신청내용<역사근린공원 리모델링>
 - 위치 : 광주 광산구 신창동 1173(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시설물 : 파고라 1개소, 테크포토존 1개소(35.3㎡), 놀이마당 1개소(57.9㎡), 경관조명 38개소
 - 포장 : 디딤석 놓기 2.4㎡, 흙포장 468.9㎡
 - 폐기 : 평의자 2개소
 - 수목 : 교목 37주, 관목 12,650주, 기타 맥문동 등 6,560본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수종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통 수종으로 식재
 -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염두해 두고 사업 시행

23. 원주 법천사지 주변 자연장 설치

가. 제안사항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 주변 자연장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원주 법천사지 주변 1구역에 자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난 제5차회의(5.9)때 가족묘지 설치(부지면적 / 봉안묘 면적 10m²)건으로 부결된 바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명 : 원주 법천사지(사적 제466호)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번지
- (3) 신청내용<자연장 설치>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65(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0m 이격)
 - 사업내용

	1차 신청(5월/부결)	금회 신청
부지면적	100m ²	100m ²
형태	가족 봉안묘(2m*1.5m)	자연장, 표지석(10cm*15c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6.07/문화재전문위원 ○○○)
 - 해당 지역은 법천사지의 좌청룡 지역에 해당하는 능선에 입지하는 곳으로 법천사지의 주능선 좌측이며, 좌청룡의 능선약간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해당 토지는 수년전 분묘 1기가 있었던 곳이나 수년전 파묘 이장한 곳임.
 - 금번 묘지 설치는 향후 사적지내 사묘의 난립으로 인한 역사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며 현실적으로 사적지역내 불법 사묘의 설치의 방지를 위한 사적지역

주변 경관관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등의 검토가 요구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24. 김제 금산사 일원 주변 호텔 증축

가. 제안사항

전북 김제시 소재 사적 제496호 「김제 금산사 일원」 주변 호텔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제 금산사 일원 주변 호텔 증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사적분과 제4차(2012.4.18), 제5차(2012.5.9) 심의 시 부결되어 계획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김제 금산사 일원(사적 제496호)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일원
- (3) 신청내용<호텔 증축>
 - 위치 :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79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30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개요

구분	증축 전	1차신청	2차신청	금회신청	증감 (2차→금회)
대지면적	9,308.00㎡	16,860.00㎡	16,860.00㎡	16,860.00㎡	-
건축면적	1,761.24㎡	4,238.27㎡	4,238.27㎡	6,335.05㎡	2,097.78㎡ 증
연 면 적	4,531.88㎡	38,653.17㎡	36,085.96㎡	39,555.65㎡	3,469.69㎡ 증
높이	30m (지상 5층)	35m (지하 3층, 지상 6층)	35m (지하 3층, 지상 5층)	27m (지하 2층, 지상 5층)	물탱크 높이 3m 감 지하 1층 감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 층별개요

층별	바닥면적(m ²)				용도
	증축 전	1차신청	2차신청	금회신청	
지하 3층	-	5,294.13	5,294.13	-	-
지하 2층	-	5,605.63	5,605.63	8,813.26	세탁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지하 1층	-	7,666.40	7,666.40	8,821.98	판매시설, 연회장, 휘트니스
지상 1층	1,182.55	4,238.27	4,238.27	6,335.05	로비, 식당, 커피숍, 객실(67실)
지상 2층	1,353.21	4,037.57	4,037.57	4,388.58	객실 61실→ 57실→82실
지상 3층	666.02	3,363.27	3,363.27	5,301.94	객실 43실→ 70실→91실
지상 4층	665.05	3,061.36	3,061.36	3,552.94	객실 73실→ 70실→62실
지상 5층	665.05	2,819.33	2,819.33	2,341.90	객실 66실→ 66실→39실
지상 6층	-	2,567.21	-		객실 50실→ 0실→0실
합 계	4,531.88	38,653.17	36,085.96	39,555.65	객실 330실→ 300실→341실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04.13/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김제 금산사의 지정구역으로부터 330여m 이격된 금산사 진입부에 기존 6층 규모의 호텔을 증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 호텔의 위치가 주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증축되는 호텔의 규모나 높이가 높고(증축 면적 34,121.29m², 높이 약 35m), 현상변경허용기준에 3구역(경사지붕 11m 이하)로 정하고 있어 김제 금산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2) 김제시장의견

- 도내 국제행사유치 및 새만금 관광개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함

(3) 금산사주지의견

- 금산사에서는 미관을 해치고 있는 위 지역에 호텔증축계획을 환영함
- 다만, 사적지정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공원집단 시설지구에 부합하게 친환경적이며 주위환경에 어울리게 현상변경이 허용 되었으면 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25. 함양 남계서원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주변에 서원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함양 남계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허가받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의 계획을 수정하여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함양 남계서원(사적 제499호)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 (3) 신청내용<서원문화 관광 자원화>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65번지 일원

구분	당초 허가사항 (2010.4.14)	금회 신청	비고	
토목 공사(조성 면적)	63,092㎡	64,012㎡	산림복원 920㎡ 추가	
건축공사	총 계	729.32㎡	618.85㎡	110.47㎡ 감소
	교육문화관	233.28㎡	144㎡	89.28㎡ 감소
	선비문화체험관(대강당)	100.8㎡	71.05㎡	29.75㎡ 감소
	선비문화체험관(소강당)	32.4㎡	27㎡	5.4㎡ 감소
	전통예절체험관	32.4㎡	81㎡	48.6㎡ 증가
	전통음식체험관	52.56㎡	153.45㎡	100.89㎡ 증가
	전통의복체험관	38.88㎡	25.92㎡	12.96㎡ 감소
	소매점	85.14㎡	88.08㎡	2.94㎡ 증가
	공중화장실	64.8㎡(2동)	28.35㎡(1동)	36.45㎡ 감소
	관리사무실	54㎡	-	삭제
	팔각정자	35.06㎡(2동)	-	삭제
	협문	2동	1동	1동 감소
	우물 복원	-	1개소	1개소 추가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26.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북 경산시 소재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에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산시 소재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허가 신청한 건임
- 2012년 5차 회의('12.05.09) 시 부결되었던 것으로서 사업내용 보완 후 재 허가 신청 한 건임
 - 당초 : 문화재지역(임당동·조영동 고분)이 사업구간에 일부 포함
 - 변경 : 문화재지역을 포함 하였던 구간(L=76, B=12)을 사업내용에서 제외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사적 제516호)

○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일원

(3) 신청내용<도시계획도로 개설>

○ 위치 : 경북 경산시 임당동 972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3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 사업규모 : L=273m, B=15m

· 토 공 : 흙깎기 1919m³, 흙쌓기 800m³

· 배수공 : 우수관(D400) L=184m, 오수관(D250) L=192m

· 구조물공 : 경계석설치 610m

· 포장공 : 아스콘포장 19a, 보도포장 1315m²

· 상수도공 : 상수도관(D100)=140m, 상수도관(D150)=118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06.0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문화재구역과 근접하는 동남측에 길이 273m, 폭 15m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교통량과 현행의 도로를 고려 할 때 공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고분군과의 근접지 임을 감안 시굴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사업구간에 대하여 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27. 진도 남도진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전남 진도군 소재 사적 제127호 「진도 남도진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도 남도진성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 사적분과 제3차(2012.3.14) 심의 시 현지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보류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진도 남도진성(사적 제127호)
 - 소재지 :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49번지 외
- (3) 신청내용<현행 진도 남도진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현행)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1m이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 가능 ○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라. 검토의견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상 작성범위는 500m임.
- 진도 남도석성의 선소와 사대 추가지정에 의해 역사문화환경으로 확대된 구역 중 동남쪽은 대부분 산과 바다이므로 현상을 보존하고, 서쪽은 산은 보존구역으로, 현행 3구역과 연결한 전답은 사적지와 300~500m 이격되어 있고 구릉 뒤에 위치하여 사적지에서 인지되지 않으므로 같은 3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해 나간다면 사적지 역사문화환경 보존, 관리에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검토(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1m(2층) 이하	
공통사항	○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2.05.07/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진도 남도석성의 선소와 사대의 추가지정에 의하여 확대된 주변 500m 범위 내 역사문화환경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동남측은 현행대로 현상을 보존하고, 서쪽의 바다와 연접한 구릉과 전담은 사적지에서 인지되지 않아 같은 3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여도 진도 남도석성의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도시계획상 용도 내용 확인 후 시행

28.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11건

가. 제안사항

울산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관문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11건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1	사적 제48호 관문성	김○○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울산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산479번지 일원(문화재구역 연결) ○ 내용 - 대지면적 : 490㎡ - 연면적 : 149.7㎡ - 높이 : 10.03m(지상2층, 목조 한옥)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2	사적 제70호 부안진서리요지	박○○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전북 진서면 진서리 584-4 ○ 내용 - 대지면적 12,286㎡, 건축면적 76.11㎡, 건물 높이 5.2m(1층) - 목구조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구역)
3	사적 제79호 고령지산동고분군	시○○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317-1 (약4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축규모 : 지상1층 / 1동 - 건축면적 : 97.38㎡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 건축 최고높이 : 6.43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구역)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4	사적 제193호 구리동구릉	○○○	<p><공동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 구리시 인창동 104번지 등 10필지(307m 이격) ○ 내용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1차심의 ('12.4.18)</td> <td>금번심의 ('12.6.13)</td> </tr> <tr> <td>신청면적</td> <td>20,081㎡</td> <td>좌동</td> </tr> <tr> <td>건축/연면적</td> <td>2,576.72/ 57,852㎡</td> <td>2,512.37/ 49,757.59㎡</td> </tr> <tr> <td>규모</td> <td>6개동 (지하1-지상18 3동 지하1-지상25 3동)</td> <td>5개동 (지하1-지상16 2동 지하1-지상19 1동 지하1-지상21 1동 지하1-지상23 1동)</td> </tr> <tr> <td>건물높이</td> <td>75.7m</td> <td>67.8m</td> </tr> </table>	구분	1차심의 ('12.4.18)	금번심의 ('12.6.13)	신청면적	20,081㎡	좌동	건축/연면적	2,576.72/ 57,852㎡	2,512.37/ 49,757.59㎡	규모	6개동 (지하1-지상18 3동 지하1-지상25 3동)	5개동 (지하1-지상16 2동 지하1-지상19 1동 지하1-지상21 1동 지하1-지상23 1동)	건물높이	75.7m	67.8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5구역) - 9층(29m) 이하
구분	1차심의 ('12.4.18)	금번심의 ('12.6.13)																	
신청면적	20,081㎡	좌동																	
건축/연면적	2,576.72/ 57,852㎡	2,512.37/ 49,757.59㎡																	
규모	6개동 (지하1-지상18 3동 지하1-지상25 3동)	5개동 (지하1-지상16 2동 지하1-지상19 1동 지하1-지상21 1동 지하1-지상23 1동)																	
건물높이	75.7m	67.8m																	
5	사적 제200호 고양서삼릉	○○○	<p><골프장 조명시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27-12번지 외 89필지(문화재구역과 연결)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875,587㎡ - 조명설치부지 : 655,231㎡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1차심의 ('12.4.18)</td> <td>금번심의 ('12.6.13)</td> </tr> <tr> <td>조명시설</td> <td>18.3m(36개), 15.2m(103개)</td> <td>15m(37개)</td> </tr> </table>	구분	1차심의 ('12.4.18)	금번심의 ('12.6.13)	조명시설	18.3m(36개), 15.2m(103개)	15m(37개)	현상변경허용기준 상 2구역(1층,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구분	1차심의 ('12.4.18)	금번심의 ('12.6.13)																	
조명시설	18.3m(36개), 15.2m(103개)	15m(37개)																	
6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박○○	<p><교회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686번지 외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2,108㎡, 건축면적 413.64㎡, 연면적 1,654.56㎡ 건물높이 20.15m(4층) 																
7	사적 제203호 파주 장릉	○○○	<p><공장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497-89번지 외 22필지 (문화재구역과 인접)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신청면적 33,102㎡, 건축/연면적 15,132/83,649㎡, 높이 25.8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3구역/2층,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8	사적 제396호 제주향파두리향몽유적	정○○	<p><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553 외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동(1동) : 면적 17.81㎡, 높이 4.35m, 목구조 - 나동(3동) : 면적 16.81㎡, 높이 4.35m, 목구조 - 다동(4동) : 면적 57.7㎡, 높이 5.15m, 목구조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2구역(1,2층 이하, 농가주택에 한함))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9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김○○	<p><주택 등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581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동(근린생활시설) : 면적 55.35㎡, 높이 4m, 경량철골조 - B동(주택) : 면적 108㎡, 높이 5.45m, 경량철골조 - C동(주택) : 면적 100.8㎡, 높이 5.45m, 경량철골조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구역)
10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신○○	<p><농수산물 직판장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67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919㎡, 건축면적 178.65㎡, 건물높이 6.25m(1층) 	
11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백○○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 산1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1,289㎡, 건축면적 49.86㎡, 건물높이 6.2m(1층) - 경량철골조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구역)

라.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내용	검토의견(현지조사 의견)	참고사항
1	사적 제48호 관문성	단독주택 신축 (김○○)	○ 신청지는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된 곳에 지상2층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관문성과 연결된 지역으로 동사업이 시행될 경우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동 건물은 제3차사적분과회의('12.3.14)시 1층규모로 신청되어 부결된 후 2층으로 변경하여 신청된 사항임
2	사적 제70호 부안 진서리 요지	단독주택 신축 (박○○)	○ 신청지는 진서리 요지 역사환경 보존을 위해 1구역(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유적과의 사이에 차폐물이 없어 건축물 신축 시 사적지 경관 훼손이 우려됨.	
3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단독주택 신축 (시○○)	○ 본 신청 건물은 문화재구역에서 40m 이격된 지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내용	검토의견(현지조사 의견)	참고사항
4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공동주택 건립 (○○○)	○ 1차 심의시('12.4.18)에 비해 층수를 하향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규모가 과도하여 신청 내용대로 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됨	
5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골프장 조명시설 (○○○)	○ 골프장 조명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였으나, 지난 4월 16일 현지조사의견과 같이 세계문화유산인 서삼릉 주변에 조명시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당시 주변 지역의 경관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였는 바, 앞으로도 조선왕릉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교회신축 (박○○)	○ 본 신청 건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37m 이격하여 교회를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사적 제203호 파주 장릉	공장 신축 (○○○)	○ 신청지는 파주 장릉과 인접한 지역으로써 신청내용대로 사업시행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됨	
8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주택 신축 (정○○)	○ 신청지는 외부인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농가주택에 한하여 신축을 허가한 지역으로, 향파두리 유적과 근접하여 주택 8동의 신축을 허가할 시 향후 향파두리 역사문화환경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9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주택 등 신축 (김○○)	○ 신청지는 고산리 유적 역사환경 보존을 위해 1구역(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고산리 유적과의 사이에 차폐물이 없어 건축물 신축 시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내용	검토의견(현지조사 의견)	참고사항
10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농수산물 직판장 신축 (신○○)	○ 본 신청 건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0m 이격하여 농수산물 직판장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1	사적 제498호 장흥 석대들 전적	단독주택 신축 (백○○)	○ 신청지는 석대들 전적의 역사환경 보존을 위해 1구역(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주택 신축을 허가할 시 향후 사적지 역사문화환경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06-029

1. 청주 상당산성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소재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85-4번지 등 5필지 1,858㎡을 청주 상당산성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상당산성(사적 제212호)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산46-7 등

(3) 지정신청

- 기존 지정면적 : 지정구역 226필지 703,114㎡, 보호구역 59필지 231,016㎡

- 추가지정 신청면적 : 5필지 1,858㎡(세부내역 붙임)

(4) 신청사유

- 상당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아래 조선시대에 충청도병마절도사영의 배후 산성으로 대대적으로 보수·정비되었으며, 이 당시 서장대, 동장대, 포루, 운주헌 등이 건조되었고 또한 전란시 부족한 군인들을 보충하기 위해 남약사, 구룡사 등의 사찰이 지어진 유서 깊은 유적임
- 이러한 중요한 문화유적들을 원형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및 정비와 시민의 문화의식 제고를 위하여 연차적 계획에 따라 매입한 성내 일부 필지를 문화재 구역으로 확대지정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05.18/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본 건은 청주시가 매입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는 청주 상당산성 내의 토지를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청주 상당산성의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청주 상당산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번 면적(m ²)	지정신청 면적(m ²)	소유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85-4	대지	468	468			지정구역
2	"	104-1	답	179	179			"
3	"	104-2	답	218	218			"
4	"	162	대지	630	630			"
5	"	산23-8	도로	363	363			보호구역
합계		5필지		1,858	1,858			

2. 아산 이충무공 유허 주변 신설고속도로 교량경관 검토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주변 고속도로 신설과 관련 교량 경관설계에 대해 협의 요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이충무공 유허 주변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2011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 11차 회의('11.10.12)에서 기 조건부 가결되어 현상변경허가 절차가 완료됨
 - 조건사항 : 현충사 진입도로의 종단개량, 보도개설, 수목식재 등은 현충사 관리소와 사전협의하여 추진
- 다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구역에서 500m) 외곽지역으로 현충사 본전에서 약 2km이격된 곳이나 계획된 교량(탕정1교)이 현충사 본전에서 조망됨에 따라 교량의 경관설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 (2) 대상문화재명 : 아산 이충무공 유허(사적 제155호)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00번지
- (3) 신청내용<탕정 1교 경관설계 검토>
 -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 사업내용
 - 교량현황
 - 교량명 : 탕정1교
 - 규 모 : 연장 923m 폭 24.3m
 - 교량형식(안)
 - 1안(현충사를 고려한 경관설계)
 - 현충사를 상징하여 경관을 강조하는 경관연출 교량 형식
 - 대표형식 : 사장교, ED교 등

- 2안(일반교량)
-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문화재로서 자연경관에 순응하는 교량 형식
- 대표형식 : PSC Box교, Steel Box교 등

라. 참고사항

(1) 현상변경허가('11.10.14) 내용

- 총연장 : 20.95km (현상변경 구간 : 1km)
- 지하차도 : 560m (박스형 60m, U타입 500m)
- 이순신대로 종단개량 : L=660m, H=0~2.85m
- 현충사 진입로
 - 종단개량 : L=454m, H=0~2.85m
 - 보도, 자전거도로 : L=454m, B=5m
- 부채도로
 - 마을진입로 이설 : L=248m, B=6m (기존 4.5m)
 - 농로이설 : L=450m

(2) 현지조사의견('11.09.29/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아산 이충무공 유허 남측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6m 이격된 곳에 당진~천안 4차선 고속도로(2공구)를 신설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건임.
- 고속도로 신설 위치는 지방도가 위치한 현충사 입구 3거리 근처로 560m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중 60m 구간은 박스형으로, 500m 구간은 U타입 구간으로 지하화 하여 도로 옆면은 복토 후 수목을 식재하여 고속도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어, 아산 이충무공 유허의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충사 진입도로에 대한 종단개량, 보도개설, 수목식재 등은 현충사 관리소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현충사 본전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2-06-031

1. 경복궁 소주방권역 내 수목이식공사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소주방 건물 복원에 지장을 주는 수목이식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경복궁」 소주방 건물복원에 지장을 주고 있는 소나무 등 수목 8주를 경복궁 경내로 분산 이식하여 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다. 보고내용

(1) 보고자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17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번지

(3) 보고내용 : 경복궁 소주방권역 내 수목이식공사

- 공사기간 : 2012.06월 ~ 13.05월(예정)

- 공사금액 : 259,000천원

- 이전위치 : 소주방 → 동궁권역, 향원지, 함화당, 동전문으로 분산 배치

○ 공사내용

- 소주방권역 소나무 7주, 산사나무 1주 등 총 8주 뿌리돌림 작업 및 이식
- 소주방권역 이식 수목 식재 공간 확보에 따른 수목 6주 위치 변경

권역별	수종	수량	수고(m)	수관폭(m)	흉고직경(cm)	근원직경(cm)
소주방 권역	소나무	7	4.0-8.0	5.5-14.5	21-77	28-70
	산사나무	1	6.0	4.0	43	54
경복궁 경내	소나무	2	2.5-8.0	2.5-3.0	20	12
	단풍나무	2	1.8-2.5	1.0-1.5		6.0-10
	느릅나무	1	5.0	4.0		25
	자작나무	1	6.0	4.0	18	

라. 참고사항(관계전문가 자문회의/'11.11.23./문화재위원 ○○○, 나무종합병원 ○○○)

- 건축물 복원공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보존하고, 이식을 할 때는 가급적 근거리에서 군집의 원형을 살려 이식
- 소나무와 산사나무는 소주방 건립 시 불가피하게 이식하여야 함.
- 수목 이식 전과 이식 후 기술적 사항 의견 제시(뿌리돌림 시 분의 크기 및 기간, 발근 및 생육관리, 병해충관리, 수형유지에 따른 수음 전지 실시 등)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2. 덕수궁관리소 사무동 (물품보관소) 신축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중구 소재 사적 제124호 「덕수궁」 내 사무동이 협소하여 사무동 (물품보관소) 신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덕수궁 관리소 사무동(물품보관소)이 협소하여 현재 각종 행사 시 행사용품 보관 및 행사 관계자의 대기장소가 없어 고건물 행각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다. 보고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번지
- (3) 신청내용<조립식 물품보관소 신축>
 - 공사기간 : 2012년 7월 ~ 2012년 8월
 - 소요예산 : 22,000천원
 - 건립위치 : 현 사무실 및 강당 뒤편 / 비공개지역
 - 공사내용 : 36㎡(4m×9m), 경량철골조(조립식 판넬) , 1층

라. 참고사항(덕수궁관리소)

- 현재 덕수궁 사무실 및 강당이 조립식 판넬로 건축되어 있고, 두 건물 뒤편에 위치하여 경관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행각에 각종 행사용품 저장 시 고건물 훼손에 따른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행사 진행자들의 대기 장소를 확보하여 보다 품격높은 행사 진행 가능.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내 복원토 정비 및 산책로 입구 정비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19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 송파구	○○○	<p><풍납동 토성 복원토 정비 및 산책로 입구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성 복원토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원토 정비 6.5㎡, 조경석 쌓기 13.5T, 화강석경계석 설치 13.6m, 소형고압블럭 설치 7.5㎡, 웬스이설 6경간 등 ○ 산책로 입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토블럭포장 22.6㎡ 등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문화재연구소 입회 하에 실시 	허가	'12.06.08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	<p><청자박물관 창업지원센터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232-4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승인된 창업지원센터 및 가마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창호에 한식 문양을 적용하고 지붕부를 태양열 구조로 변경하였으며, 도자분야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마시설 변경함. · 창업지원센터 : 철골조, 209.28㎡, 높이 4.8m · 가마, 비가림시설 : 가마 3기(전통가마, 통가마, 전통가마-개량형), 295.84㎡, 높이 5.35m 	허가	'12.05.2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전북 익산시	국○○	<숲가꾸기 사업> ○ 위치 : 익산시 석왕동 산 4-7(문화재 구역으로부터 400m 이격) ○ 사업내용 - 면 적 : 0.13ha - 사업내용 : 덩굴류에 의한 피해목, 마찰목 및 고사목 모두베기 후 조림	허가	'12.05.22
사적 제118호 진주성	경남 진주시	○○○	<방범시설(CCTV) 설치> ○ 위치 : 진주박물관 주변 사각지대 ○ 내용 - 설치 종류 : 지주대, 카메라 - 설치 수량 : 지주대3개, 카메라 7대 - 카메라 설치방법 : 신규 지주대 4대, 기존 지주대 1대, 외벽에 2대 고정 ○ 기간 : 허가일~2012.08.31까지 ○ 허가조건 - 우리청과 협의하여 최종 보완된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것 · 카메라와 지주대(기존 지주대 포함)의 색상은 무채색 계열로 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할 것	조건부 허가	'12.05.29
사적 제122호 창덕궁	서울 종로구	○○○	<가설건축물 설치> ○ 3m×6m×2.8m	허가	'12.06.11
사적 제123호 창경궁	서울 종로구	○○○	<창경궁 주변 성균관대 교육연구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건축면적 : 669.19㎡(감 60.59㎡) ○ 연면적 : 10,478.78㎡(감 1,592.95㎡) ○ 규모 : 지하 3층 지상 12층 (감 지하 1층, 지상 1층) ○ 최고높이 : 45.7m(감 2.4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변경없음)	허가	'12.05.23
사적 제125호 종묘	서울 종로구	류○○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건축면적 등 규모 : 변경없음 ○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일부 관광숙박시설	허가	'12.05.14
사적 제189호 충주 임충민공충렬사	충북 충주시	○○○	<문화재구역 내 CCTV 설치> ○ CCTV(제어함체 포함) 1개소(높이 6m) 및 부대설비 1식	허가	'12.06.08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경기 화성시	○○○	<버스정거장 설치>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42 ○ 내용 - 규모 : 5.1m×1.885m×2.7m ○ 기간 : 허가일~2012.12.31까지	허가	'12.05.2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	경기 화성시	○○○	<p><이동식 화장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31번지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2.2m×1.2m×2.9m ○ 기간 : 허가일~2012.12.31까지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설계도면대로 설치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당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후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한 후에는 상기 이동식 화장실을 이전 또는 철거할 것 	조건부 허가	'12.05.29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 종로구	○○○	<p><서울역사박물관 휴게공간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설치 1식(약33m×5.5m ~4.5m) 	허가	'12.06.08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김○○	<p><민가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순천시 낙안면 남내리 125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레이트 변형 부속채 정비 · 구조 : 목구조, 초가지붕 · 규모 : 면적18.5㎡, 높이 4.45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은 재사벽으로 마감토록 함. 	조건부 허가	'12.06.11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충남 공주시	임○○	<p><수목식재(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나무 등 800주 - 웬스 250m(높이 축소 조건) ○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나무 등 500주 - 웬스 250m(높이 1.6m) 	허가	'12.05.23
사적 제410호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지석묘군	전남 화순군	○○○	<p><임도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산 205 외 9필지(80m 이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1.27km - 성·절토, 배수시설, 석축쌓기, 혼합석부설 등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성,절토 시행 	조건부 허가	'12.05.16
사적 제417호 괴산 송시열 유적	충북 괴산군	조○○	<p><건물증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증축) : 61.91㎡ ○ 연 면 적(증축) : 61.91㎡ ○ 구 조(증축) : 경량철골조 ○ 정화조 1식 	허가	'12.06.1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439호 원주 강원감영	강원 원주시	박○○	<p><아파트 재건축 공사(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원동 산10-1번지 일대 ○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 9,014.97㎡ - 연면적 : 159,067.71㎡ - 최고높이 : 68.2m - 규모 : 13동, 지상 22층, 지하 3층 ○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 9,066.10㎡ - 연면적 : 158,058.94㎡ - 최고높이 : 68.2m - 규모 : 13동, 지상 22층, 지하 4층 <p>(※ 변경사유 : 실시설계로 인한 변경)</p>	허가	'12.05.29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전남 나주시	○○○	<p><도로 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나주시 과원동 11 외 8필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 왕복 4차선 - 변경 : 왕복 4차선, 교차로 개선, L=420m, B=18.3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터파기 실시 	조건부 허가	'12.05.10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전남 나주시	○○○	<p><임시주차장 및 잔디밭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나주시 금계동 33-8 외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주차장 설치 : 1,607㎡ · 잡석 부설(106.7㎡), 로프 주차선 설치(37대) - 잔디밭 조성 : 1,787㎡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조사 등 문화재 보존관리계획 수립, 시행 전까지 사용하도록 함. 	조건부 허가	'12.06.11
사적 제495호 양양 낙산사 일원	강원 양양군	○○○	<p><보타락 해체·보수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6번지 ○ 내용 : 기와 해체(보토, 강회층)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목개관이상 해체공사는 과다하므로 기와해체(보토, 강회층) 결과에 따라 공사범위 전반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 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단, 기단은 추가 공사 없이 현 상태 유지) 	조건부 허가	'12.05.25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